

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5-50호

『**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』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5년 8월 19일

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

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제안이유

가. 시 문화재위원회 위원의 장기간 연임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폐단을 미연에 방지하고 새로운 전문인력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자 함.

2 주요내용

가. 시 문화재위원회 위원의 연임을 두 차례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5조제4항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31일(월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, 팩스 또는 이메일로 인천광역시의회(참조 : 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, 전화032-440-6224, 팩스 032-440-8764, 이메일 ysi3312@korea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주소·성명(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) 및 전화번호

제출자	해당 조항	찬반여부 및 사유	비고
○주 소: ○성 명: ○연락처:			

※ 다른 서식 사용 가능

4. 참고자료

가.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

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4항 본문 중 “연임할 수 있다”를 “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시 문화재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)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시 문화재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구성) ① ~ ③ (생략)	제5조(구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 되, <u>연임할 수 있다</u> . 다만, 공 무원인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	④ _____, <u>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</u> --, _____ _____ _____.